

■ 서류제출기간 및 계약안내

구분	기간	장소
당첨자 서류검수	2022. 09. 13(화) ~ 2022. 09. 19(월) 10:00 ~ 16:00	사업주체 건물주택 -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
정당계약	2022. 09. 20(화) ~ 2022. 09. 22(목) 10:00 ~ 16:00	

■ 제출서류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 유의사항
공통 서류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 발급분에 한함(대리발급분은 불가)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'상세'로 발급
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
	소득세 납부내역 (5개년)	본인	-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[표4]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-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"0"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(세) 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의 성년인 직계 존·비속의 소득 입증서류)
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※ 기록대조일은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.	
해당 자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존속	-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혼인사실여부확인
		자녀	-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-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이외 불가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	- 임신의 경우(접수장소에 비치) - 입양의 경우
	사실증명 (신고사실없음)	세대원	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(계속하여 근로소득,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한 경우)
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 전원	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[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(캡처)+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제출] /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출입국사실증명원	세대원 전원	-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(단신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)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표시 ※ 기록대조일은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.
	해외체류[단신부임]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청약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대리인 신청	위임장	청약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접수 장소에 비치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경증서
	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2.08.18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건물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관련법규	해당기관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재직증명서(*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 포함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) ※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	- 해당직장 - 세무서
	신규취업자/ 금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-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-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-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)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명세서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	-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	-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	-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- 사업자등록증 사본	- 국민연금공단 - 세무서
	신규사업자	-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-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- 사업자 등록증	- 국민연금공단 - 세무서
	법인사업자	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	- 세무서 - 해당직장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,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-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- 세무서 -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-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	- 계약기간/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(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)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-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	- 해당직장 -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-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(계속하여 근로소득,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한 경우) - 비사업자 확인 각서(견본주택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/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	- 세무서 - 접수장소	

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2022년 적용)

공급유형	구분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130% 이하	~8,071,614원	~9,361,052원	~9,523,894원	~10,113,773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130% 초과~160% 이하	8,071,615원 ~9,934,294원	9,361,053원 ~11,521,294원	9,523,895원 ~11,721,715원	10,113,774원 ~12,447,720원
추첨제 (30%)	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	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
		160%이하	~9,934,294원	~11,521,294원	~11,721,715원	~12,447,720원
	1인 가구	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선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
■ 자산소득세 납부 입증서류

세부구분	해당자격	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,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·해당직장 ·세무서
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,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·건강보험 공단
소득세 납부 입증서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※납부내역증명서 상 "납부 내역이 없습니다" 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(5개년도 전부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	

■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 3,100만원 이하	건축물	<p>○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	
토지	<p>○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,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<p>○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</p>													

■ 자산보유[부동산 소유] 시 증빙서류 안내[발급대상 : 세대구성원 전원 '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인증서 필요']

증빙방법	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	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
	<p>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[www.iros.go.kr] 사이트 접속</p> <p>② 등기열람/발급 ▶ '부동산 소유현황' 클릭</p> <p>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</p> <p>④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이용 안내 동의 후 '확인' 클릭</p> <p>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'검색' 클릭 (주민등록번호 공개)</p> <p>⑥ 증명서 선택 후 암호 입력 ▶ '확인' 클릭</p> <p>⑦ 팝업에서 '확인' 클릭</p>	<p>⑧ 결제화면으로 이동</p> <p>⑨ 결제방법 선택 및 결제 진행</p> <p>⑩ 미열람보기 ▶ '열람' 클릭</p> <p>⑪ 부동산 소유현황 '인쇄' 아래 증빙서류 안내에 따라 ⑪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 합산(3.31억원 이하 확인)</p>
<p>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[www.iros.go.kr] 사이트 접속</p> <p>② 등기열람/발급 ▶ '간편검색' 클릭</p> <p>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</p>	<p>④ 물건지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</p>	

■ 자산보유[부동산 소유] 시 공시가격 서류발급 안내

건축물 종류		발급기관	발급방법
건축물	주택	공동주택 [아파트, 연립, 다세대]	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(www.realtyprice.kr)
		단독주택	사이트 접속 ▶ 공동주택공시가격 ▶ 주소 입력 ▶ 열람하기 ▶ 출력
	주택 외	서울 소재지	서울시 이택스 (etax.seoul.go.kr)
		그 외 지역 소재지	위택스 (www.wetax.go.kr)
토지 (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)		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(www.realtyprice.kr)	<p>① 사이트 접속 ▶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▶ 주소 입력 ▶ 열람하기 ▶ 출력</p> <p>② 사이트 접속 ▶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▶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이동 ▶ 주소 입력 ▶ 검색 ▶ 출력</p> <p>사이트 접속 ▶ ETAX 이용안내 ▶ 조회/발급 ▶ 주택 외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▶ 주소 입력 ▶ 조회 ▶ 상세보기 ▶ 출력</p> <p>사이트 접속 ▶ 지방세 정보 ▶ 시가표준액 조회 ▶ 주소 입력 ▶ 검색 ▶ 출력</p> <p>사이트 접속 ▶ 개별공시지가(없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) 조회 ▶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이동 ▶ 주소 입력 ▶ 조회 ▶ 출력 ※면적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서류 발급</p>